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99
----------	-----

2015년 7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5월 21일,
김영한 의원외 28명
-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1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61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
(2015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한 의원)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 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가. 제안 배경 및 개요

- 본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시켜야 하며, 실태조사와 동 조사에 대하여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동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에서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된 바,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등 지원에 대해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으나, 서울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임의규정
으로 되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산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서울시 예산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에 해당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영한